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9
----------	-----

2022. 2. 10.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강남구청장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2. 10.)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 현재 운영 중인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의 위탁해지 요청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위탁운영체 선정이 필요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동의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필요성

-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게 함으로써 공보육 품질 향상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
-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라. 시설 개요 및 현황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 4개소

연번	위 치	세대수	면적(m <sup>2</sup> )	정원(명)	준공일(예정)	위탁기간(예정)	비 고
1	일원동 688 (개포주공9단지)	1,703	1,001.3	143	2022.12 월	2022. 12. ~ 2027. 11.	무상임대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의무설치)

연번	위 치	세대수	면적(m <sup>2</sup> )	정원(명)	준공일(예정)	위탁기간(예정)	비 고
2	자곡동 335 (수서행복주택 A1블럭)	830	407.41	58	2022.12월	2022. 12. ~ 2027. 11.	"
3	자곡동 347-5 (수서행복주택 A3블럭)	597	794.09	113	2023.4월	2023. 4. ~ 2028. 3.	"
4	개포동 189 (개포주공4단지)	3,375	725	104	2023.5월	2023. 5. ~ 2028. 4.	"

○ 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등 : 3개소

(2022.1.7.기준, 명)

연번	어린이집 (인가일)	주 소	원장	시 설 현 황			위탁체	현위탁기간
				정원 (현원)	교직원	연면적 (m <sup>2</sup> )		
1	산 들 (2014.10.20.)	자곡로3길 45	석은선	45 (21)	9	206	종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성지교회	2017.10.20.~ 2022.10.19.(5년)
2	자 곡 (2014.11.11.)	자곡로175	김수희	49 (40)	12	278	사단법인 에이에프예스한국국제교류회	2017.11.5.~ 2022.11.4.(5년)
3	강 남 구 청 (2012.03.13.)	학동로 426	이소현	98 (63)	18	458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019.6.8.~ 2022.6.7.(3년)

※ 변경위탁 사유 : 위탁기간 만료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직원수	위탁운영	사업내용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박주영	삼성로72길7	35명	학교법인 경희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가정양육 지원</li> <li>■ 부모, 교직원교육 등</li> </ul>

※ 위탁 사유 : 위탁기간('18. 9. 23.~'23. 9. 22.) 중 위탁운영 해지요청

마.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사. 수탁자 선정방법 :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6개소)과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 및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 민간위탁의 필요성 검토

###### 1)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방과후반 운영을 직영이 아닌 위탁사무로써 민간에 맡기고 있음.

-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정원 98명 가운데 직원 자녀는 58명, 지역자녀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의 59%(정원기준)가 직원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음.
- 다만,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은 98명이나, 실제 이용하는 현원은 63명으로 결원 발생인원이 35명(35%)에 달하고 있는 바, 정·현원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결원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집행부는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만을 합산하여 1,952명을 상시근로자 수로 파악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제채용공무원 등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 직원 현황 관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종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강남구청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담당부서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강남구청 직원 자녀의 육아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지원하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 본 동의안은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함) 운영에 관한 사무의 현 위탁운영체인 “학교법인경희학원”의 위탁기간('18.9.23~'23.9.22, 5년)이 남아 있으나, 학교법인경희학원이 위탁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신규 위탁체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 전문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1) 및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10조제2항2)에 따라 설치·운영 중임.

- 
-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 ④ (생략)

<표 1>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

어 린 이 집 지 원	가 정 양 육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컨설팅(회계·운영,안심보육,평가인증지원)</li> <li>○ 장애아 보육지원 사업</li> <li>○ 아동학대 예방사업</li> <li>○ 대체교사 지원, 부모모니터링</li> <li>○ 상담사업(보육교직원, 부모 문의)</li> <li>○ 건강한 유아 성장 보육서비스 지원</li> <li>○ 생태친화형 보육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놀이실 및 육아카페 운영</li> <li>○ 장난감·영유아 및 양육도서 대여</li> <li>○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li> <li>○ 전문놀이 프로그램 운영</li> <li>○ 영아조기선별 및 중재지원(양육 상담+치료)</li> <li>○ 부모 및 조부모 교육</li> <li>○ 지역 사회 연계 사업(우리동네 보육반장 등)</li> </ul>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 본 동의안은 강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4개소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 2개소에 대해 조례 제17조3)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3)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 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하고,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 4개소

연번	위 치	세대수	면적(㎡)	정원(명)	준공일(예정)	위탁기간(예정)	비 고
1	일원동 688 (개포주공9단지)	1,703	1,001.3	143	2022.12월	2022. 12. ~ 2027. 11.	무상임대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의무설치)
2	자곡동 335 (수서행복주택 A1블럭)	830	407.41	58	2022.12월	2022. 12. ~ 2027. 11.	"
3	자곡동 347-5 (수서행복주택 A3블럭)	597	794.09	113	2023.4월	2023. 4. ~ 2028. 3.	"
4	개포동 189 (개포주공4단지)	3,375	725	104	2023.5월	2023. 5. ~ 2028. 4.	"

<표 3> 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등 : 2개소

(2022.1.7.기준, 명)

연번	어린이집 (인가일)	주 소	원장	시 설 현 황			위탁체	현위탁기간
				정원 (현원)	교직원	연면적 (㎡)		
1	산 들 (2014.10.20.)	자곡로3길 45	석은선	45 (21)	9	206	종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 회성지교회	2017.10.20.~ 2022.10.19.(5년)
2	자 곡 (2014.11.11.)	자곡로175	김수희	49 (40)	12	278	사단법인 에이에프에스한 국국제교류회	2017.11.5.~ 2022.11.4.(5년)

4) 소결론

-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및 종합육아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서비스와 자문 및 교육 제공능력이 중요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지닌 민간의 전문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라 할 것임.
- 동 위탁사무의 특성상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등 돌봄기술을 갖추고 사회복지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무에 대한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민간위탁의 절차상의 문제

-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단계에서 집행부내 민간위탁의 절차를 보면 대략적으로 ‘① 민간위탁 대상사무 현황조사(시설현황, 운영현황) ② 대상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산업적 등 검토) ③ 업체선정방안 검토(업무범위, 계약법/참가자격/계약기간/대가지급/위수탁협약 등) ④ 민간위탁 비용산정 검토(산정기준검토, 조직규모, 인건비, 경비, 대안별 검토) 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검토(서비스평가지표개발, 평가기준수립, 평가적용검토)’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sup>4)</sup>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는 기속행위 규정<sup>5)</sup>을 명시하고 있음.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5) 기속행위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 그러나 집행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및 종합육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사전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음.
- 행정절차는 정책과 규범의 민주적 정당성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입장을 극복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할 때, 절차적 과정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음.
- 앞으로 민간위탁 절차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전례답습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4 종합 검토 의견

-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민간위탁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되며, 의회 동의 절차 이후의 수탁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선정 이후에도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등

#### ○ 위탁체 현황

구분	총계	사회복지 법인	재단 법인	사단 법인	종교 법인	학교 법인	민간 단체	단체	협동 조합	개인
개소수	63	21	4	14	5	6	9	2	1	1

#### ○ 지원현황 : 63개소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b>총 예산</b>	<b>83,897,185</b>	<b>19,540,714</b>	<b>41,388,847</b>	<b>22,967,624</b>
구립어린이집운영지원	6,736,623	-	-	6,736,623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19,002,218	5,665,156	9,346,596	3,990,466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5,503,243	897,723	3,977,114	628,406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지원	5,998,107	1,039,321	2,964,409	1,994,377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248,976	74,693	121,998	52,28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22,590	6,777	11,070	4,743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991,658	11,696,246	10,006,788	4,288,624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598,748	-	9,598,748	-
시간제보육운영지원	321,598	160,798	80,400	80,400
어린이집운영지원(서울시)	7,811,951	-	4,455,999	3,355,952
공기청정기 관리비용 지원	299,194	-	209,436	89,758
방과후어린이집운영지원	68,400	-	34,200	34,20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638,456	-	295,378	343,078
어린이집 놀이특화프로그램 지원	1,082,000	-	-	1,082,000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573,423	-	286,711	286,712

## 2.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 ○ 설치운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 시설현황 : 5개소(1개 본원, 4개 분원)

사업구분	센터명	위 치	규모 (연면적)	설치시기	전화번호
어린이집지원	본원	삼성로72길7	279.18㎡	2006.9월	546-1735~7
가정양육지원	대치	영동대로65길11,4층	320.71㎡	2009.4월	546-1768~9
	도곡	도곡로18길57,1층	208.24㎡	2013.2월	529-1742~3
	삼성	봉은사로82길23,3층	206.70㎡	2010.4월	546-1783,6
	논현	학동로43길17,2층	152.71㎡	2009.9월	546-1874~5

### ○ 위탁운영 현황

위탁법인	법인대표	소재지	위탁기간
학교법인 경희학원	조인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길 47	2018. 9. 23. ~ 2023. 9. 22.(5년)

※ 현재 위탁운영체인 경희학원(경희대학교)에서 위탁해지 요청

→ 신규 위탁체 선정 시까지 운영(2022.3.31.예정)

## 3. 국공립어린이집 등 현황

###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 4개소

연번	위 치	세대수	면적(㎡)	정원 (명)	준공일 (예정)	위탁기간 (예정)	비 고
1	일원동 688 (개포주공9단지)	1,703	1,001.3	143	2022.12월	2022. 12. ~ 2027. 11.	무상임대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의무설치)

연번	위 치	세대수	면적(m <sup>2</sup> )	정원 (명)	준공일 (예정)	위탁기간 (예정)	비 고
2	자곡동 335 (수서행복주택 A1블럭)	830	407.41	58	2022.12월	2022. 12. ~ 2027. 11.	"
3	자곡동 347-5 (수서행복주택 A3블럭)	597	794.09	113	2023.4월	2023. 4. ~ 2028. 3.	"
4	개포동 189 (개포주공4단지)	3,375	725	104	2023.5월	2023. 5. ~ 2028. 4.	"

○ 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등 : 3개소

(2022.1.7.기준, 명)

연번	어린이집 (인가일)	주 소	원장	시 설 현 황			위탁체	현위탁기간
				정원 (현원)	교직원	연면적 (m <sup>2</sup> )		
1	산 들 (2014.10.20.)	자곡로3길 45	석은선	45 (21)	9	206	종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 회성지교회	2017.10.20.~ 2022.10.19.(5년)
2	자 곡 (2014.11.11.)	자곡로175	김수희	49 (40)	12	278	사단법인 에이에프에스한 국국제교류회	2017.11.5.~ 2022.11.4.(5년)
3	강 남 구 청 직장어린이집 (2012.03.13.)	학동로 426	이소현	98 (63)	18	458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019.6.8.~ 2022.6.7.(3년)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직원수	위탁운영	사업내용
강남구육아종합 지원센터	박주영	삼성로72길7	35명	학교법인 경희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가정양육 지원</li> <li>■ 부모 · 교직원 교육 등</li> </ul>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59
----------	-----

제출년월일 : 2022. 1. 2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보육지원과

## 1. 제안이유

- 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 나. 현재 운영 중인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의 위탁해지 요청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위탁운영체 선정이 필요함.
- 다.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동의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필요성

-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공보육 품질 향상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
-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라. 국공립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개요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 4개소

연번	위 치	세대수	면적(㎡)	정원(명)	준공일(예정)	위탁기간(예정)	비 고
1	일원동 688 (개포주공9단지)	1,703	1,001.3	143	2022.12 월	2022. 12. ~ 2027. 11.	무상임대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의무설치)
2	자곡동 335 (수서행복주택 A1블럭)	830	407.41	58	2022.12 월	2022. 12. ~ 2027. 11.	"
3	자곡동 347-5 (수서행복주택 A3블럭)	597	794.09	113	2023.4월	2023. 4. ~ 2028. 3.	"
4	개포동 189 (개포주공4단지)	3,375	725	104	2023.5월	2023. 5. ~ 2028. 4.	"

- 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등 : 3개소



(2022.1.7.기준, 명)

연번	어린이집 (인가일)	주 소	원장	시 설 현 황			위탁체	현위탁기간
				정원 (현원)	교직원	연면적 (㎡)		
1	산 들 (2014.10.20.)	자곡로3길 45	석은선	45 (21)	9	206	종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성지 교회	2017.10.20.~ 2022.10.19.(5년)
2	자 곡 (2014.11.11.)	자곡로175	김수희	49 (40)	12	278	사단법인 에이에프예 스한국국제 교류회	2017.11.5.~ 2022.11.4.(5년)
3	강 남 구 청 (2012.03.13.)	학동로 426	이소현	98 (63)	18	458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019.6.8.~ 2022.6.7.(3년)

※ 변경위탁 사유 : 위탁기간 만료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직원수	위탁운영	사업내용
강남구육아종합 지원센터	박주영	삼성로72길7	35명	학교법인 경희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가정양육 지원</li> <li>▪ 부모, 교직원교육 등</li> </ul>

※ 위탁 사유 : 위탁기간('18. 9. 23.~'23. 9. 22.) 중 위탁운영 해지요청

마.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사. 수탁자 선정방법 :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 계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이하 생략>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 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하고,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